

영국의 생명보험계약상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한 연구

김 원 각*

<차례> _____

I. 서 론

III. 생명보험약관상 자살조항

II. 자살에 대한 영국 사회의 인식

IV. 결 론

주제어 : 영국생명보험계약상 자살, 자살면책조항, 심신상실 상태, 면책기간, 공서, 자살법, 몰수법

<국문초록> OECD보고에 따르면 2020년 영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4명이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24.1명으로 자살률 1위인 한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다. 그러나 영국처럼 자살문제가 심각한 법적 주제가 된 나라도 드물다. 영국에서는 생명보험계약에서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보험증권은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전형적인 것은 흔히 면책기간으로 불리는 1년 또는 2년 내에 행하여진 자살에 대해서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살일지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부활 계약의 경우에 그 기간은 새로 기산한다. 그러나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살, 보험가입시부터 자살할 의도가 있었던 경우, 오직 보험금 지급을 노려 자살한 경우 등을 불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자살면책조항은 영국의 생명보험증권상 표준적인 조항이다. 반면에 개인보험과 달리 단체보험에서는 자살조항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불가쟁조항이 대개 2년의 가쟁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자살조항과는 별개로 운용되며, 가쟁기간 내에는 자살을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영국과 우리와 가장 큰 차이는 영국에서는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이 점이 본고를 집필하게 된 동기이다.

위와 같은 영국의 전통적 태도는 미국 보험법과 실무에 거의 그대로 채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보험(2년 내의 자살)과 상해보험(보험기간 내의 자살)에서 자살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 여부가 달라진다. 그런데 최근 보험수익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이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도 과거에 비하여 심신상실의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국립경찰대 강사, 법학박사(S.J.D.).

- 논문접수일(2023.10.09), 심사개시일(2023.10.19), 게재확정일(2023.11.05)

경우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 경향은 심신상실의 경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자살면책조항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분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필자는 영미의 보험실무가 우리 보험업계가 당면한 위와 같은 문제를 상당히 해소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살에 대한 영국의 보험실무에 큰 영향을 준 영국 사회의 자살관의 역사적 경위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영미 문헌에서 자살면책과 관련하여 반드시 소개하는 베레스포드 판결을 통해 쟁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위의 고찰을 바탕으로 현재 영국의 약관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분석하여 우리가 참고할 점을 정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영국을 답습하고 있으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미국 보험법과 실무상 자살문제를 소개할 예정이다.

I. 서 론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영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4명으로 자살률 1위인 한국의 24.1명에 비해 현저히 낮다. 영국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26번째로 높다.¹⁾ 그러나 자살률의 높고 낮음을 떠나 역사적으로 영국처럼 자살이 심각한 법적 주제가 된 나라도 드물다. 한때는 자살을 중대범죄로 보아 망인의 동산을 몰수하고 시신을 매장하였다. 1961년 『자살법』 제1항이 “사람이 자살을 행하는 것을 범죄로 하는 법준칙은 본법에 의하여 폐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살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살을 죄악시하고 이를 공서(public policy)의 문제로 보는 전통적인 태도는 보험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영국에서는²⁾ 오랫동안 자살을 불법행위로 보

1) OECD (2023), Suicide Rates (indicator). doi: 10.1787/a82f3459-en. <https://data.oecd.org/healthstat/suicide-rates.htm>(2023. 6. 1. 방문).

2) 영국(Unted Kingdom)은 엄밀히 말하면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3개국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의회는 오랫동안 국내문제에 관한 입법권을 유지해왔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은 보통법에 기반한 것으로 중세기 영국법원에서 형성되어 현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연방국가와 미국 등 전세계 여러 나라에 적용되어 왔다. 보통법을 공통 기반으로 하는 영국 보험계약법은 아직 판례가 주된 근거가 되고 있고 영연방과 미국 법원의 판결은 영국법원에서도 설득력을 지닌다. 이에 비하여 스코틀랜드 법은 아직 보통법보다는 로마법에 기반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판결을 영국 법원이 참고하기도 한다. 북아일랜드도 보통법에 기반하지만 별도의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위 4개국의 최고법원은 대법원(Supreme Court)으로 2009. 8.에 그동안 최고법원 역할을 하던 상원(귀족원; House of Lords)에 대체되었다. 상급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을 기속하며 일반적으로 각급법원은 동일심급의 선례에 기

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경제적 이익(사망보험금)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배하였다. 이와 같은 원칙은 법에 명시적 근거를 둔 것은 아니지만, 자살을 범죄로 여기는 사회분위기와 함께 자살면책조항이 생명보험약관의 필수적인 내용으로 포함되어 왔다. 그 전형적인 내용은 보험증권이 발행된 때로부터 2년 내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그가 죽음을 실행할 때에 정상적인 정신능력이라는 아니든(whether in sane or insane)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보험자가 약관에서 설정한 면책기간 내에는 그 정신상태를 따지지 않고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1세기동안 생명보험증권에 당연한 것처럼 포함되어 왔고 현재도 그렇다. 또한 이 조항은 미국의 보험법에 계수되거나 실무에 이입되어 미국의 대다수 주 입법과 보험업계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다.³⁾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 보험약관에서는 면책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의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자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이 행하여진 경우는 이를 ‘자사(自死)’라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면책기간에 대하여는 생명보험표준약관은 2년의 기간을 정하고 있고, 상해보험에서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다.⁴⁾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살보험금의 지급 여부는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속된다. 선례에 기초한 판례법은 보통법 체제에 내재된 것이다. 제1차산업혁명 국가인 영국의 제조업은 쇠퇴하였지만 보험, 은행, 금융업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수출이 경제력을 유지시키고 있다. John Birds, *Insurance Law in the United Kingdom*, 4th ed., Wolters Kluwer, 2018, pp.17-21.

3) 미국의 생명보험증권에서도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내의 자살은 그것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건 아니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다. 성문법에 이와 반대되는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약관조항은 유효하지만 약관에 면책조항은 있어야 한다. 약관에 면책조항이 없어도 보험자는 면책이라고 보는 묵시적 제외사항(implied exception)이론,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행하여진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공서 위반으로 보는 영국 보험계의 일부 시각은 오늘날 미국에서는 많이 퇴색했지만 몇몇 법원은 영국식 사고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을 역선택하여 자살을 통하여 보험수익자가 보상받는 것은 고의에 의한 부당이득이라는 생각은 확고하다. Robert E. Keeton, Alan I. Widiss & James M. Fischer, *Insurance Law: A Guide to Fundamental Principles, Legal Doctrines, and Commercial Practice*, 2nd ed., W. Academic Publ'g, 2017, pp.388-389, 410-412; Christopher C. French & John F. Dobbyn, *Insurance Law in a Nutshell*, 6th ed., W. Academic Publ'g, 2021, p.205; Robert H. Jerry, II & Douglas R. Richmond, *Understanding Insurance Law*, 6th ed.,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pp.380-381.

4) 이와 같은 차이는 손해보험회사가 생명보험금 지급을 주로 하는 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고전적인 점영금지원칙(보험업법 제9조)을 고수하려는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 자살인구 1만3352명,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26명으로 증가 추세이고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우울증 환자는 2021년 진료환자 통계에서 93만 3481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⁵⁾ 정부는 2027년까지 OECD 자살률을 18.2명으로 30% 낮추겠다는 『5차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보건복지부, 2023. 4.)을 확정하였다. 이는 일본이 연간 자살자 3만 명이 넘던 시절 위기감을 갖고 제정·시행한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의 시책을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팔목할 성과가 있기를 고대한다.

위와 같은 여러 통계를 보면 자살자의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자살사고에 대한 다툼의 초점은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인지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⁶⁾ 하여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을 두고는 심신상실인지를 판단하는 개별요소들과 그 값에 대하여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어 업계·법조계·학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필자는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그런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지 찾아보던 중, 영국과 미국에서 우리와 다르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처리방식은 영국에 기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영국 보험법을 계수한 미국의 경우 빠르고 폭넓게 독자적인 법체계와 법리를 구축해 가고 있는데, 초기 청교도들은 자살에 대한 전통적인 영국 사회의 종교적 입장을 그대로 가져왔다. 생명보험계약상의 자살면책에 대하여는 영국 실무를 거

5) 통계청, 2021 사망원인통계; 보건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건강심사평가원, 우울증 진료환자통계 등 참고

6) 대법원 2011. 4. 29.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다270555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등 참조

의 수용하여⁷⁾ 입법과 약관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독특한 취급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경우를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선행연구에서 영국의 경우를 소개한 글이 몇 편 있으나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는 각 주의 입법 태도 등 분량이 많아 다음 논문에서 소개한다.⁸⁾

우리나라에서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문제는 고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 부담책이라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169조, 자살면책을 명정한 일본 구 『상법』 제680조⁹⁾와 우리 법의 입법적 연혁을 고려하여 볼 때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수 판례와 같이 지급과 같이 심신상실 상태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비록 법제는 다르지만 보험이라는 기술적

7) Timothy S. Hall, "A Modern Forfeiture: Towards Abolition of the Life Insurance Suicide Exclusion", *Rutgers J. L. & Pub. Pol'y*, Vol.18., 2021, pp.9-10; Travis Luis Pantin, "What Can't be Insured: The Policyholder's Own Bad Acts", *Comm. Ins. L.J.*, Vol.29, 2023, pp.103-104.

8) 잉글랜드와 웨일즈 외에 영연방 국가에서도 자살면책에 대하여 영국의 실무태도를 따르고 있는지도 우리의 제도개선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호주 보험법 교과서에서는 보험자가 자살사고에 대하여까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면 계약의 해석상 당연히 보험자면책이라고 설명하면서 만일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고의로 야기된 사고의 결과에 대하여도 보험보호를 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현재는 규칙으로 대체되어 시행되지 않지만 1945년 호주 『생명보험법』 제120조(Sec.120[Effect of suicide or capital punishment on policy] of the Life Insurance Act of 1945)는 "보험증권의 진실한 해석에 따라, 회사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손이나 행위로 죽거나, 제정신이거나 또는 제정신이 아니거나, 또는 사형을 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보험증권 하에서 손실을 초래한 고의적 행위는 그 자체 불법적인 것이며 공서를 이유로 손실의 회복이 부인된다. 즉 부도덕한 원인으로부터 소권은 생기지 아니한다는 법원에 따라 반사회적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무자격한 자에게는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부도덕한 행위자의 권한이 집행되지 아니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에 대하여 법원이 균형 있게 권리를 실행하여 줄 수도 있다고 하며 영국 판례인 *Bresford v. Royal Insurance Co.*[1938] A.C. 586 at 595 사건과 호주 판례인 *Nuhan Ltd(in liq.) v. Sun Alliance Life Assurance Ltd*(1982) 2 A.N.Z. Insurance Cases 60-494 사건을 인용하고 있다(Anthony A. Tarr, *Australian Insurance Law*, The Law Book Company Limited, 1987, p.211). 한편 베레스포드 판결이 내려지던 시대에 인도 성문형법은 자살방조를 범죄로 하였으나 자살 자체를 범죄로 보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자살을 범죄로 보는 영국의 관습법이 인도의 성문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Northern India Ins Co Ltd v. Kanhaya Ltd*(1938) 19 Ind LR 542(life))한 바 있다(Malcolm A. Clarke, Julian M. Burling & Robert L. Purves,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6th ed.,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09, p.806). 인도에서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자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Shivam Pandagr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Suicide Clause in Life Insurance Policy in India, USA and UK", *INT'L J.L. MGMT. & HUMAN.*, Vol.4, 2021, p.324, 333.

9) 이를 이어 일본 『보험법』 제51조는 자살면책을 명정.

제도를 취급함에 있어서 영미의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그 서설적 검토를 진행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자살에 대한 영국 사회의 과거 오랫동안의 인식과 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법들을 본다. 둘째, 자살과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영미의 모든 문헌이 다루고 있는 영국의 베레스포드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자살면책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셋째, 1961년의 『자살법』 폐지로 베레스포드 판결이 선례로서의 의미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레스포드 사건 당시의 약관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를 살핀다.

II. 자살에 대한 영국 사회의 인식

1. 보통법상 『자살법』 시대

서양에서 자살행위를 보는 시각은 로마 시대부터 나뉘어 있었다고 한다.¹⁰⁾ 그리스 시대와 다른 생사관이 지배한 중세 암흑기에는 자살은 “절망으로 인한 악마적 유혹의 결과 또는 광기 어린 행동의 결과”로 여겨졌다.¹¹⁾ 계몽주의 시대 후반으로 가면서 자살의 원인으로 정신의학적 설명이 설득력을 얻었다. 영국에서도 자살자의 상당수가 자살을 결행할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18세기 후반 드러났다.

영국 보험계약상 자살 문제는 오래전부터 관심사였다. 영국 보험법의 체계상 자살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16세기 영국 판결은 자살은 자연과 신과 국왕에 대한 범죄이기에 중죄라고 선언하여 왔다.¹²⁾ 이에 따라 영국 보

10) Alex B. Long, “Abolishing the Suicide Rule”, *Nw. U. L. Rev.*, Vol.113, 2019, p.767, 772 citing George Minois, *History of Suicide: Voluntary Death in Western Cultu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99, pp.43-47.

11) St. Bruno는 자살한 사람을 ‘악마의 순교자(Satan's martyrs)’로 경멸하였다. St. Augustine은 『The City of God』에서 자살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심지어 강간을 피하기 위해 뛰어내리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이는 기독교칙령(Christian edicts)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파문되고 기독교식 장례는 금지되었다. 정신질환조차 종종 죄악이나 악마의 지배로 간주되었다. 정신질환이 생리학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점은 중세 후기에 들어서야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계몽기를 거쳐 18세기 후반에야 자살이 종교나 도덕성 보다는 생리적 요인에 의존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Id.* at 773-775.

12) 예컨대 *Hales v. Petit* (1562) 75 Eng. Rep. 387, 400 (QB).

통법은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에 대한 특별한 형벌을 인정하여 정상적인 정신상태라면 망인의 행위는 범죄(*felo de se*)에 해당하여 그의 개인 재산을 몰수하였고, 망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면(*non compos mentis*) 몰수는 하지 않았다.¹³⁾

자살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초기 미국 식민지에 그대로 계수되었고¹⁴⁾ 400여 년 후의 미국 판결에서도¹⁵⁾ 발견된다. 그 결과 모든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그 자신이 사고를 고의적으로 초래하여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되어 왔다.

영국은 보험계약에 관해 오랫동안 불문법 체계를 이어 오다가 1906년 『해상보험법』 제정을 계기로 성문법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흔히 이해한다.¹⁶⁾ 그러나

- 13) Glucksberg, 521 U.S. at 711-12. 16세기 영국의 대다수 판결은 망인이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Minois, *supra* note 10 at 62). 몰수는 왕실의 수익성 높은 재원이 되었고, 자살 사건의 검시관들이 자살에 대한 모든 판결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마도 이러한 결과를 설명해 줄 것이다. 당시 지방 검시관에서 왕의 구호금품 배분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왕실 행정부의 전체 부서가 자살에 관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 14) 자살을 처벌 가능한 범죄로 다루는 영국 보통법은 식민지의 모든 주(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뉴햄프셔, 뉴욕, 메릴랜드)에 그대로 계수되었다. 코네티컷주에서는 19세기말까지 자살을 범죄로 다루었다. Suzanne M. Alford, "Note: Is Self-Abortion a Fundamental Right?", *Duke L.J.*, Vol.52, 2003, p.1011, 1027.
- 15) Tate v. Canonica, 5 Cal. Rptr. 28, 31-32 (Ct. App. 1960). 이 판결은 미국 판결이지만 영국의 Blackstone의 Commentaries 189 (8th ed. 1778)를 인용하고 있다. 블랙스톤은 자살의 중죄적 성격을 (자신의 신민을 보존하는 데 관심 있는) 왕에 대한 공격이자 (전능하신 분의 특권을 침해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그의 앞에 뛰어드는) 신에 대한 공격으로 중대범죄라고 설명하였다. 블랙스톤은 옥스퍼드대학 최초로 영국법 강의를 담당(Vinerian Professor of English Law)하였는데, 최고재판소 법관으로 가기 직전까지 집필한 4권의 『영국법주석서』[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1765-69)]는 영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기본적 법률서로서 '오랫동안' 그리고 '널리' 참조되었다.
- 16) 영국보험계약의 기원은 이태리 상인이 행하던 실무를 수용한 16세기 런던상인의 해상거래에 기원한다. 로이드 커피점은 그 상징이었다. 맨스필드경은 18세기 후반에 '보다 전통적인 보통법 관념'과 '해상법으로부터 파생된 원칙'을 판결에 적용하였는데 이것이 지금껏 근대 보험법의 기초가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의회의 입법은 매우 드물었다. 다음과 같은 특정사항을 제외하고 영국에서 성문법은 보험의 중요한 법원이 아니다. 특정한 경우란 ①도박계약이 보험계약으로 위장한 경우를 통제하고, ②1906년 『해상보험법』을 성문화하고, ③지금은 급속히 쇠퇴하지만 간이생명보험(Industrial life assurance)을 일련의 법으로 규율하고, ④보험자의 지급여력 보장을 법제화하고, ⑤자동차보험이나 고용주배상책임보험 등 일정 보험의 강제보험화를 위해 입법을 하며, ⑥보험판매 통제를 위한 입법(예컨대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을 하였고 ⑦매우 획기적 입법통제로서 2012년의 『소비자보험(고지와 표시)법』, 2015년 『보험법』 개정 등이 있었다(Birds, *supra* note 2 at 22-23).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이익이 필요 없다는 보통법에 따라 도박보험의 위험성이 커지자 의회가 1774년 『생명보험법』을 제정하여 현재도 적용된다(Birds, *supra* note 2 at 66). 위와 같은 입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전반에 걸쳐 규율하는 일반

보험계약에 직·간접으로 연관있는 수많은 성문법이 존재하여 왔다.

보험계약에서 자살에 대한 이해와 취급도 관련있는 성문법의 제정 또는 폐지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1962년의 『자살법』 폐지, 폐지 전에 존재하던 보통법상의 자살규범, 1982년의 『몰수법』 등이 그것이다.¹⁷⁾

2. 생명보험에서의 자살의 취급

1) 가능자 판결

(1) 서언

영국에는 보험자의 자살면책을 규정하는 성문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통법상 자살이 범죄이던 시절에는 자살을 범한 피보험자의 생명보험은 집행할 수 없었다.¹⁸⁾ 만일 계약에 따른 권리가 불법행위로 오염되었다면 법원은 권리의 실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불법행위로부터 소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Ex turpi causa non oritur actio*)는 것은 영국법의 오랜 원칙으로 공서이다.¹⁹⁾ 비록 이 법언이 정확히 정의하는 바는 없으나 이 법언은 보험계약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²⁰⁾ 첫째, 보험금청구자에게 구제가 허용되어 청구자가 그의 범죄적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보험금청구자가 자신의 청구를 불법계약에서 찾아야 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해당 계약의 불법성을 주장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의 청구는 집행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원칙에 비추어 보통법에 따라 범죄로 취급된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하여 생명보험약관은 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법은 없다.

17) 영국에서도 2002년 정부백서 『Saving lives: Our Healthier Nation (OHN)』에서 2010년까지 자살자 20% 감소를 목표로 자살예방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영국의 예방 전략은 ‘포괄성’, ‘증거에 기할 것’, ‘명확성’, ‘평가를 이념으로 하여 자살에 쓰이는 방법과 설비·구조의 감소’, ‘고위험자의 위험 경감’, ‘마음 건강하게 만들기’, ‘양질의 보도’, ‘연구’ 등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였다. 영국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살자는 1984년 인구 10만 명당 14.5%, 2000년 11.1%, 2021년 10.7%로 떨어졌다.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deaths/bulletins/suicidesintheunitedkingdom/2021registrations>(2023. 09. 01. 방문).

18) Clarke, Burling & Purves, *supra* note 8 at 806.

19) John Birds, Ben Lynch & Simon Milnes, *MacGillivray on Insurance Law*, 13th ed., Thomson Reuters(Professional) UK Limited, 2015, p.369.

20) *Id.* at 369-371.

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보험증권 발행 후 1년 등 일정기간 이내의 자살에 대하여는 그것이 비록 자사인 경우에도 면책하였다는 점이다. 정신이상 상태에서의 자사도 자살로 본 것은 피보험자의 자기파괴 행위를 범죄로 비난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추측전대, 면책기간 내의 자기파괴행위에 대하여는 무조건 면책하고 면책기간 경과 후에는 무조건 부책하기로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살법』 폐지로 선례로서의 지위는 잃었으나 영국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도 자살면책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베레스포드 사건 판결을 보자.

(2) 사실관계

1925년 Rowlandson 대령은 피고 보험회사와 5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²¹⁾ 보험금은 5만 파운드였다. 각 보험증권에는 만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단능력의 유무에 불구하고(sane or insane) 자기 손으로 죽는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무효는 대세적 법률효과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이다. 1934년 롤런드슨 대령은 빚이 많아 보험료를 낼 수 없었다. 보험료 납입은 8월 3일 오후 3시까지 유예되었는데 유예기간 종료 몇 분 전에 그는 자신에게 총을 쏘 자살하였다. 보험가입 후 9년째 되는 해였다. 그의 조카인 유산관리인 베레스포드가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계약체결 후 1년 내의 자살만 면책으로 하는 약관규정대로라면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피고 생명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자살은 범죄행위(criminal offense)이므로 면책이라고 주장하였다.

(3) 소송의 경과

이 사건 항소심법원(Court of Appeal)은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불허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의도적 자살은 범죄라는 보험법 이외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였다. 그러나 판결의 취지는 정신능력 있는 자의 자살은 범죄로 간주되지만 정신능력 없는 자의 자살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었

21) Rob Merkin, *Louvy, Rawlings and Merkin's Insurance Law: Doctrines and Principles*, 4th ed., Hart Publishing, 2022, p.277.

다.²²⁾ 보험증권에 판단능력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피보험자는 보험료지급을 지체하고 있었고 보험회사는 보험료 지급을 유예하고 있었던바 이 사건 자살은 그 지급유예기간 내의 사고였는데, 만일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그때에 미지급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하면 될 일이었다.

보험계약 후 오직 1년 이내의 자살에 대하여만 면책하며 그 기간 경과 후의 사망에 대하여만 보험금을 준다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법원은 당시 자살은 범죄이므로 공서에 따라 보상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보험자면책의 부차적 이유는 그 사망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 한편 판단능력이 없는 자의 자사는 자살은 아니지만 이 사건 보험증권에는 “sane or insane”문구를 삽입하여 면책기간 내의 자사에 대하여도 역시 면책으로 하고 있었다.

결국 베레스포드 사건의 항소심은 ‘공서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후 이 사건은 귀족원에서 다루어졌다.

귀족원(상원; House of Lords)은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이 어떤 내용인지와 해당 계약이 공서양속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를 살폈다.

액킨 경(Lord Atkin)은 보험증권에서 자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데, 첫째,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행하여진 자살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며, 보험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자신의 의도적 행위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보험사고를 일으켜서는 안되므로 보험자는 그와 같은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결론은 공서양속을 적용한 결과가 아니라 보험증권의 정확한 해석의 결과라고 밝혔다. 둘째, 액킨 경은 위 원칙은 판단능력이 없는 자의 자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²³⁾ 위 두가지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보험계약에서 흔히 자살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는 데, 판단능력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자살로 비롯된 사망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귀족원은 보험계약에 따라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해석

22) Andrew McGee, *Life Assurance Contracts*, Routledge-Cavendish, 2006, p.189.

23) Beresford v. Royal Insurance Co. Ltd.[1938] AC 594-595(HL).

의 일반원칙에 따라 실현되어야 하며 실현한 후에야 그 결과가 ‘공사’에 반하는지 여부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해석하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판단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 그의 사망에 대하여 유언집행자나 보험계약의 양수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동의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실시하였다.²⁴⁾

즉,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면 보험회사는 물론드슨 대령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면책기간 경과 후에는 보장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그 계약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지를 살핀 결과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액킨 경은 위 입장을 지지하면서 “제 정신일 때 자살하는 것은 영국법에 의하면 중죄이다. 이것은 아주 일찍부터 그래왔다. 『형법요론』에서 형법 제319조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살인이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자살하는 사람은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며, 살인이라는 사실에 부속되거나 제2급 살인의 주범이 된다고 서술되어 있다. 두 사람이 자살을 약속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면 그 생존자도 살인자다....이는 영국법에 의한 중죄의 본질(nature of *felo de se*)로서, 원고가 개인대리인으로서 피보험자가 자기 자신에게 살인을 실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의 보험금 청구는 살해당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 보험증권에 대한 살인자나 그의 대리인에 의한 청구 또는 보험증권의 양도에 따른 청구와 기술적으로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우리는 살인자나 그의 재산이나 그의 양수인이 그 보험계약에 따라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²⁵⁾ 또 라이트(Wright) 경이 다룬 the *ex turpi principle*을 인용하면서, “많은 판결이 다양한 사실 상태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칙을 적용하여 왔다. 이것들은 모두 극단적인 ‘*ex turpi causa non oritur actio*’²⁶⁾의 예시이다. 이 격언 자체는, 학습된 언어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24) Beresford v. Royal Insurance Co. Ltd. at 595-596.

25) Beresford v. Royal Insurance Co. Ltd. at 599.

26) 부도덕한 원인으로부터 소권은 생기지 않는다(from immoral cause, no action arises)는 원칙은 오염된 손(unclean hands)의 원칙과 비슷하다. 후자는 형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자의 손은 깨끗하여야 한다는 법언이다. 양심을 중시하는 정의로운 형평법원은 비록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위, 신의성실을 결한 행위 기타 형평의 원리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

의 적언들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정의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범죄자가 사망하여 망인의 인격대표자가 망인의 사망 후에 비로소 구체화 된 급부의 청구를 구하는 경우에 범죄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집행을 법원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망인의 유언집행자 또는 유산관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실시하였다.²⁷⁾

액킨 경은 또한 위험인수자는 보통 계약해석 문제로서 피보험자 자신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단지 계약해석의 기본적인 규칙임을 명백히 하였다. 즉 “보험법의 통상적인 원칙들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그 자신의 고의적인 행위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는 공서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계약을 정확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이는 기본규범이고 계약에서 명시적 조항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필요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액킨 경은 영국 사회를 경악에 빠뜨린 전대미문의 살인사건인²⁸⁾ 1911년의 크리펜(Crippen)사건 판결을 인용했는데, 이 사건 법원은 아내를 살해한

우에는 구제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원고는 보통법상 손해배상은 인정받아도 형평법상의 금지명령(injunction)이나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은 인정받지 못한다. 이 원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으로 *Holman v. Johnson* (1775) 1 Cowp 341 at 343에서 맨스필드 경이 언급하였다. *Tinsley v. Milligan* (1994) 1 AC 340에서는 *Holman* 사건의 경직된 엄격하고 도덕적인 접근법으로부터 신뢰기준(Reliance Test)으로 항변인정 기준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 항변은 여전히 기계적·형식적·도덕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끝에 영국 대법원은 2016년 *Patel v. Mirza* (2016) UKSC 42, 2017 A.C. 467 판결에서 보다 융통성있는 기준(Three-stage Test)을 마련하였다(이 사건 미르자는 은행에서 발표를 미룬 정부정책에 관한 정보를 빼돌려 파텔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파텔은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의 일부 주식의 가격에 베팅하기로 합의하고 62만 파운드를 미르자에게 건넸다. 증권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사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1993년 『형사법』 제52조에 따른 위법행위로 사실상 범죄수임계약이다. 이 계획은 기대했던 내부자정보가 실현되지 않아 실패하였다. 피고 미르자는 원고 파텔에게 약속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원고는 계약과 부당 이득에 근거한 62만 파운드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신뢰를 근거로 삼았다. 피고는 전체계약이 불법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강제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당사자 간의 신뢰와 공평한 구제를 막는 것이었다. 영국 대법원은 불법의 목적, 공서 및 비례성의 요건과 균형을 이루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원고의 청구권이 형사범죄에 관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회수하였다. 이 판결은 영국법의 본질적 판결 또는 혁명적 판결로 평가된다. 그 결과 불법행위 항변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불법적인 계약에 따라 부여된 급부의 반환이 늘 불가능한 것은 아니게 되었다. Robert M Merkin & Raoul P. Colinvaux, *Colinvaux's Law of Insurance*, 11th ed., Sweet & Maxwell, 2016, p.169, 163; Birds, Lynch & Milnes, *supra* note 19 at 369.

27) *Beresford v. Royal Insurance Co. Ltd.*[1938] AC 596(HL).

28) [https://www.thehistorypress.co.uk/articles/the-notorious-case-of-dr-crippen/\(2023. 6. 20. 방문\);](https://www.thehistorypress.co.uk/articles/the-notorious-case-of-dr-crippen/(2023. 6. 20. 방문);) Birds, Lynch & Milnes, *supra* note 19 at p.381, 383.

납편의 재산권에 대하여 그가 저지른 범죄의 결과로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액킨 경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계약에 따르건 증여에 따르건 그의 범죄로부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법재판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범죄에 대한 유혹을 제공하거나 범죄에 대한 전제를 제거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²⁹⁾

(4) 소송의 성과

결국 귀족원은 항소심과 달리 공서의 문제로부터 빠져나왔다.³⁰⁾

요컨대 베레스포드 사건은 『자살법』이 폐지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공서에 반한다는 생각이 우세하던 시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에서는 1년의 면책기간이 지난 후의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자살사건은 이 면책기간이 무려 8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보험자는 보험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험자가 약관의 명문조항과 반대되는 결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서를 이유로 드는 것이 편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액킨 경은 이 문제가 공서의 문제가 아니라 약관해석의 문제라고 보았다. 자살면책조항을 정확히 해석해 보니 그 약관조항의 피상적인 표현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귀족원은 미국의 판결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미국 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생명보험에 적용될 약관조항이 비록 자살사건의 경우에 보험금청구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예컨대 약관조항이 만일 자살이 일정기간 경과 후에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막는 일반원칙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며 보험금 지급여부는 각주의 입법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판결하였다.³¹⁾ 그러나

29) Beresford v. Royal Insurance Co. Ltd.[1938] AC 599(HL). 위법행위(illegality)를 한 자가 그로 인한 손실을 복구할 수 없다는 원칙은 오늘날도 유지된다. 예컨대 영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D&O insurance)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이사가 그의 ‘고의(deliberate)나 무모(reckless)한 행동으로 생긴 손실을 몰어내도록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는 공서에 기한 면책 사유이다. 다만 학설로서는 법령위반이 있어도 순수한 과실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30) James Davey & John Coggon, “Life Assurance and Consensual Death: Law Making for the Rationally Suicidal”, *Cambridge L.J.*, Vol.65, 2006, p.528.

31) Northwestern Mutual Life Insurance Co v. Johnson (1920) 254 US 96.

귀족원은 자살행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이 공서에 반하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자가 자살의 경우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한 결과라고 판시하였다.³²⁾

오늘날 영국에서 베레스포드 약관과 별로 다르지 않은 자살조항이 유지되는 것은 액킨 경의 기여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영국에서도 자살은 적어도 법률상 더 이상 범죄행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베레스포드 판결은 달리 볼 여지가 있을까? 영국에서는 이를 약관 규정에 따라 해결할 문제로 본다. 약관이 일정 기간 내의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할 수도 있고 부책으로³³⁾ 규정할 수도 있다. 면책조항은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묵시적으로 인정된다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아직까지 대다수 약관이 일정기간 내의 자살에 대하여 면책조항을 두는 상황이어서, 불법행위인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부책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베레스포드 판결은 영국의 표준적인 보험법 서적에서 흔히 인용되고 후속 판결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³⁴⁾

2) 『자살법』 폐지

죽음의 경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오랫동안

32) 반복하여 말하자면, 액킨 경은 보험금을 줄 수 없는 것은 살인자에게 보험금을 주는 것이 공서 위반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약관을 정확하게 해석(correct construction of contract)한 결과라고 밝혔다. [1938] AC 586, [1938] 2 All ER 602.

33) Ellinger & Co v. Mutual Life Ins Co[1905] 1 KB 31(CA). 다만 자살이 상해사고가 되지는 않는다.

34) Porter v. Zurich Insurance Company: NPC 38, [2009] 2 All ER (Comm) 658, [2009] EWHC 376 (QBD 5 Mar 2009) 판결을 보면,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자신의 가옥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심하게 우울하고 술에 취해 망상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자신이 불을 지른 화재사건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복구를 원하는 원고의 주장은 공서와 보험법의 일반원칙에 반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원고는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의 본질과 질을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알고 있더라도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요구되는 수준까지 보여주지 못하였다고 설시하였다. 그 밖에 KR and others v. Royal and Sun Alliance Plc:Times 08-Nov-2006, [2006] EWCA Civ 1454; Commissioner of Police for the Metropolis v. Reeves (Joint Administratrix of The Estate of Martin Lynch, Deceased): HL 15 Jul 1999. Times 16-Jul-1999, Gazette 11-Aug-1999, [1999] 3 WLR 363, [1999] UKHL 35, [2000] 1 AC 360, [1999] 3 All ER 897; Dunbar (As Administrator of Tony Dunbar Deceased) v. Plant: CA 23 Jul 1997. Gazette 24-Sep-1997, [1997] EWCA Civ 2167, [1997] 4 All ER 289, [1998] Ch 412, [1997] 3 WLR 1261, [1998] 1 FLR 157, [1998] Fam Law 139, [1997] 3 FCR 669 등.

동안 영국사회는 자연사를 제외하면 재해사고사망, 자살, 심지어 안락사나 존엄사까지 모두 범죄로 여겨왔다. 이는 매우 공리주의적으로 보이지만 비판의 여지도 크다.³⁵⁾

의학의 발달과 죽음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1961년 『자살법』은 사람이 자살을 행하는 것은 범죄라는 법준칙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된다고 선언하였다(제1항).³⁶⁾ 다만 자살을 범죄로 보는 성문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보통법이 존재하고 적용되어 온 것일뿐이어서 법의 폐지는 더 이상 보통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³⁷⁾

『자살법』의 폐지에 따라 판결에서도 “자살법은 자살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바뀌는 표시이다. 과거에는 자살행위가 보편적인 비난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오늘의 사회는 의학의 발달로 이와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훨씬 이해하게 되었다. 피해자측에 심각한 정신적 불안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살이나 부도덕한 시도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가 행하여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졌다. 다만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상태였다면 입장이 달라진다.”고 실시하기에 이르렀다.³⁸⁾

『자살법』 폐지에 따라 자살은 범죄행위라는 커먼로 원칙은 폐기되고 보험계약상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도 가능해졌다.³⁹⁾ 그러므로 만일 보험증권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저지른 자살행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판단능력 유무를 따지지 않고 보험자가 면책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피보험자의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이 결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자는 면책하는 것이 된다.

1961년 『자살법』으로 자살자의 상속인이나 유산관리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지

35) Davey & Coggon, *supra* note 30 at 528-540.

36) 이 법의 정식명칭은 『An Act to amend the law of England and Wales relating to suicide, and for purposes connected therewith[3rd August, 1961]』.

37) 그러나 타인의 자살 또는 자살 시도를 교사, 방조, 조연, 알선하는 사람은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제2-1항). 또 살인 또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자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해당 사람의 자살을 방조, 교사, 조연 또는 알선한 것으로 입증되면 배심원은 해당 범죄에 대하여 유죄를 평결할 수 있다(제2-2항).

38) Kirkham v. Chief Constable of the Greater Manchester Police[1990] 2 QB 283, 296. Clarke, Burling & Purves, *supra* note 8 at 806.

39) Gray v. Barr[1971] 2 QB 554, 582, per Salmon LJ(CA-liability). 불법적인 낙태 중에 사망한 여성에 대한 보상을 허용한 Carlson v. Travelers Ins Co, 316 NYS 2D 398(1970).

급하지 않는 베레스포드 판결은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자살법』이 자살 또는 자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할지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 문제는 약관이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달려있다. 아직까지 영국의 생명보험약관은 베레스포드 사건의 해당약관을 모델로 삼고 있다.

또한 자살을 아직 범죄로 간주하는 법역에서는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가부가 공서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호주에서는 피보험자가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자살하였다면 그와 같은 피보험자의 의도된 손실을 보상하는데 보험자가 합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만일 보험증권이 의도된 손실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진다. 호주의 생명보험약관에는 “만일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의 개시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그 자신의 손으로 또는 행위로 죽는다면 그가 제정신이거나 아니거나를 묻지 않고 보험계약은 무효이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와 같은 의도적 행위가 약관상 손실을 야기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공서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법언에 따라 청구권자가 권리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거나 범죄에 대하여 보상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법언에서 다룰 수 없는 법적 기준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반사회적 행위의 중대성과 권리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의 사회적 손실 등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의 과실책임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을 경우의 사회적 피해 문제와 같은 것이다. 1945년 호주 『생명보험법』 제120조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단지 자신의 손이나 행위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제정신이든 아니든,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증권이 무효로 되지는 않으며 보험증권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보험회사는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고 규정하였다.⁴⁰⁾ 이 조항은 1995년 『생명보험법』 제228조에서 “생명보험회사는 만일 보험증권에서 자살한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면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거로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 보험증권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⁴¹⁾

40) Tarr, *supra* note 8 at 211.

41) Birds, Lynch & Milnes, *supra* note 19 at 402.

3) 공서양속

(1) 공서의 의미

자살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에서 공서문제가 제기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첫째, 영국에서 자살을 오랫동안 범죄라고 이해하면서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비록 그것이 자살 당사자가 아닌 자살자의 유족이나 양수인에게 지급된다 하여도 법질서에 반한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이런 생각은 앞서 본 베레스포드 판결의 항소심에도 유지되고 있었다. 둘째,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자살이나 역선택을 부추기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후자의 생각은 유족보호 문제와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

본래 넓은 의미에서 공서는 입법부나 법원이 국가와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관심사로 간주하는 원칙과 기준(principles and standards)을 말한다. 법원은 “공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선언할 때 자신의 판결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때때로 이 용어를 사용하며, ‘법 정책’(policy of law)이라고도 한다.⁴²⁾ 좁은 의미의 공서는 사람이 일반대중에게 해를 입히는 일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서의 개념은 넓고 추상적이어서 무엇이 공서에 적합하거나 반대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법률이나 판결을 통하여 확정될 수 밖에 없다.

영미계약법(Anglo-American contract law)은 당사자가 원하는 바는 거의 대부분 합의할 수 있다는 계약자유를 전제로 한다.⁴³⁾ 그러나 현대사회 대다수 소비자계약이 표준화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면서, 사업자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을 따라야 하는 부합계약(adhesion contract),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⁴⁴⁾ 공서(public policy)

42) Bryan A. Garner, Black's Law Dictionary, 9th ed, West, 2009, p.1351에 따르면 ‘법정책’ 또는 ‘공서’는 계약의 유효성을 평가할 때 흔히 사용된다. 이 용어의 역사는 명확하지 않다. 법원은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중의 이익을 고려한다. 그러나 현대의 판결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법원의 의무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 의무가 행사될 수 있는 범위를 점점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43) Jeffrey W. Stempel, *Interpretation of Insurance Contracts: Law and Strategy for Insurers and Policy Holders*, Little, Brown & Co., 1994, p.239.

44) Unconscionability는 영국의 형평법원(court of equity)에서 유래한다. 보통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이지만 형평법은 특정이행이나 금지명령을 원칙으로 삼았다(이에 대한 만론 있음). 형평법원은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볼 때 양심에 크게 어긋나는(unfair surprise) 정도의 불공정하고 비양심적인 계약에 대하여 특정이행 등의 구제수단을 주는 것을 거부해 왔다. 비양심성은 미국에서 UCC §2-302에 채택되었는데 비양심성의 정의는 따로 하지 않은 채 법원은 계약이나 계약 내의 조항이 비양심적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비양심적인 조항을 배제

등이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서는 우리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계율을 형성하는 법적 규범과 원칙인 공공의 가치를 포섭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⁴⁵⁾

(2) 보험계약에 있어서 공서

공서는 모든 법영역에서 제기되지만 특정 법분야에서 더욱 중시되고 명확한 역할을 하는데, 계약법의 다른 분야보다 보험법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며 보험법의 핵심적 특징이라고 한다.⁴⁶⁾ 그 이유를 보험은 개인과 가계가 의지하며 생명보험이나 장애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같이 장기계약이며, 가장 기초적인 금전적 필요에 대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에서 무엇이 공서인지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 논의를 찾기는 쉽지 않다.⁴⁷⁾ 무엇보다 다양한 주제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공서문제로 다룰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바탕에 있는 원칙들이 해당 주제를 뛰어넘어 보험법 영역에서 일반적인 예측가능성과 구조를 갖출 수 있는 공식화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즉, 보험법에서 공서의 문제가 다른 법적 원칙들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되고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원칙이 되는지, 아니면 보험증권 조항의 유효성을 제한하는 공서는 종잡을 수 없고 여기저기에 음습하게 널려 있는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⁴⁸⁾ 이론상 공공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거나 해를 끼치

하여 효력을 인정하거나 비양심적 결과를 회피하도록 조항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동산매매를 적용대상으로 삼지만 그 취지는 다른 많은 종류의 계약에 적용된다(ALI, Restatement(Second) of Contracts §208). 우리나라에서는 unconscionability를 ‘불공정’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법리의 역사적 경위와 특성을 고려하면 ‘비양심상’이라는 역어가 더 적절해 보인다.

45) Stempel, *supra* note 43 at 241.

46) Christopher C. French & Robert H. Jerry, II, *Insurance Law and Practice: Cases, Materials, and Exercises*,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p.857은 다음과 같은 영국 판결(Richardson v. Mellish, 130 Eng. Rep. 294, 303(1824))을 인용하는 것으로 공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어떤 사건을 공서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다루기 힘든 말을 타는 것과 같다. 일단 한번 올라타면 어디로 데려갈지 전혀 알 수 없다. 당신을 건전한 법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 이는 다른 점에서 실패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전혀 논쟁이 되지 않는다.” 같은 부분을 Stempel 교수도 인용하고 있다. *Id.* at 254.

47) Ivamy 교수는 “보험계약과 같은 약정이 법의 일반정책에 반하는 경우 법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이라고 정의하고 보험가입자가 관세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수입한 물품을 도난에 의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강제할 수 없음을 예로 들고 있다. E.R. Hardy Ivamy, *Dictionary of Insurance Law*, Butterworths, 1981, p.118.

48) Kenneth S. Abraham & Daniel Schwarcz, *Insurance Law and Regulation: Cases and Materials*, 6th ed.,

는 보험계약조항은 건전한 도덕성을 뒤엎거나 판결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서는 공공이익과 건전한 도덕성에 대한 개별 법원과 개별 법관의 판단에 의존하는 관계로 명확한 선을 긋거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계약자유에 대한 시각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험법 문헌은 어떤 개별사정이 공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예컨대 계약의 체결이 장차 불법을 목적으로 체결되거나 계약이행 중에 고의행위의 결과 약관이 담보하는 손실이 초래되었다면 그 행위는 자체로서 불법(unlawful)이며 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공서에 반한다는 식이다. 시작부터 불법인 계약, 예컨대 1774년 『생명보험법』(Life Assurance Act)이 요구하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체결된 보험계약은 공서에 반한다.⁴⁹⁾ 또 계약체결은 합법적이었지만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의도한 범죄(intentional wrongdoing)의 결과에 대하여 보상하거나 피보험자가 의도적으로 실행하기로 한 사기, 기망 기타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상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와 같은 민·형사상 범죄에 대한 보상계약은 불법계약에 불과하다.⁵⁰⁾⁵¹⁾ 그러나 피보험자의 과실에 기한 손실을 담보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등에서 보듯이 공서위반이 아니다.⁵²⁾

다만 공서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근거도 되지만 보험계약의 무효나 취소 등을 제한하는 논리가 되기도 한다.⁵³⁾

이와 같이 보험증권의 각 조항의 의미를 결정짓는 여러 원칙에 더하여 해당 약관조항의 유효성은 당해 보험계약이 체결된 법역의 공서에 달려있다.

아브라함과 슈와르츠 교수에 따르면 공서는 헌법, 성문법, 재판의 법원(sources)에 화체(embodied)되어 있으며 계약에 화체된 상응하는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

Foundation Press, 2015, pp.94-105.

49) Birds, Lynch & Milnes, *supra* note 19 at 371. 1774년 『생명보험법』은 생명보험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피보험자의 생사에 이해관계 없는 자의 생명보험가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Ivamy, *supra* note 47 at 75.

50) 해적에게 몸값을 주고 풀려나는 것은 공서에 반하지 않는다. Masefield AG v. Amlin Corporate Member Ltd[2010] EWHC 280(Comm): [2010] 1 Lloyd's Rep.509.

51) 징벌적 손해배상 방법은 영국에서는 크게 퇴조하고 이 제도를 계수한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는데 미국에서도 이를 부보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며 주에 따라 다르다. French & Jerry, II, *supra* note 46 at 866-878.

52) Birds, Lynch & Milnes, *supra* note 19 at 391.

53) Jerry, II & Richmond, *supra* note 3 at 355-356.

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한다.⁵⁴⁾ 예컨대 마약판매계약이 무효인 것과 같다. 만일 계약조항이 잠재적으로 공서와 연결되지만 동시에 당사자 간에 법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해당조항을 무효로 하거나 적용을 제한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형평에 기한 기준을 갖고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공서는 선과 악, 공정과 불공정과 같은 사법적으로 민감한 다툼을 제기한다. 보험증권 조항의 유효·무효에 대한 모든 기준을 다 동원하여 해석하여도 다툼의 여지는 늘 남게 된다. 공서의 문제로는 흔히 도박계약과 피보험이익 요건, 무보험자동차 담보, 계약의 불법성, 고의적 보험사고 등이 다루어진다.⁵⁵⁾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의 엄격 책임과 합리적기대의 원칙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서의 징후인데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균형은 보험관계의 여러 측면에서 보험자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계약외 손해배상, 악의적 청구거부나 지연지급 등에서도 공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서의 주된 원천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라고 한다.⁵⁶⁾ 그 이유는 법원의 판단은 헌법을 비롯한 의회 법률이 해당조항의 목표와 효과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해당조항이 부당하게 도덕적 위험을 높이는 경우, 해당조항이 피보험자로 하여금 담보를 유지하기 위한 불합리한 행동을 강제하는 경우 등이 공서위반인데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주요기준이 성문 법령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위임입법에 따른 행정부의 하위 규범, 전문직 윤리강령 등을 공서로 보는 판결도 있다.⁵⁷⁾ 물론 법령에 위반하는 보험조항에 대하여 늘 공서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니다.⁵⁸⁾

54) Abraham & Schwarcz, *supra* note 48 at 94.

55) 영국에서 Merkin, *supra* note 21 at 278-285, 287, 294. 278-280, 382-383, 414, 419, 423, 459 etc.; 미국에서 French & Jerry, II, *supra* note 46 at 857; Keeton, Widiss & Fischer, *supra* note 3 at 548-556.

56) French & Jerry, II, *Id.* at 858.

57) French & Dobbryn, *supra* note 3 at 124.

58) 영국에서 공서문제로 자주 논의되는 것은 피보험이익, 고의사고 등 불법행위,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 문제 등이다(Merkin, *supra* note 21 at 165, 277, 240, 281 등; Clarke, Burling & Purves, *supra* note 8 at 114-116, 547-550, 784-785, 795-807, 1050 등). 공서문제에 대하여 가장 방대한 검토를 한 것은 미국의 French 교수와 Dobbryn 교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들의 공저서 본문 513 쪽 중 공서에 관하여 무려 110쪽을 할애하고 있다. 이 책을 비롯하여 많은 저자들이 공서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 피보험이익, 최저보장액, 도박계약, 사기적 행위나 고의적 가해에 대한 명시적·

공서위반의 효과를 보면, 약관의 명문조항은 공서위반으로 무효가 되기도 하며 명문의 규정이 오히려 확장적용되기도 한다. 그와 같은 점에서 공서는 공동체를 대변하는 법원의 재판을 통한 보험약관의 사법적 개정(judicial amendment)이다. 공서위반인 약관조항은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무효이므로 해당조항에 상응한 보험료도 반환되어야 논리적이지만 법원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등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여하한 형태의 구제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의 내용과 계약 체결의 목적이 모두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공서의 원칙은 영국에서는 앞서 언급한 1774년 『생명보험법』(The Life Assurance Act of 1744)에서 유래하여 해상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종목에 적용되어 왔다.⁵⁹⁾ 구체적으로 보험증권의 어떤 조항이 공서에 반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의 조항을 집행할 경우 반사회적 행위의 심각성, 사회적 해악을 부추길 우려, 사적 자치와 계약준수의 필요성(sanctity of contract), 보험계약의 실행 거부가 대다수 공중에 미칠 영향, 고의적 행위가 손실을 야기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된다.⁶⁰⁾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보험증권조항이 헌법이나 성문법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의 목적 또는 효과를 달성할 때, 보험증권조항이 도덕적 해이를 과도하게 부추기는 때, 보험증권조항이 보험보호를 유지하려는 피보험자에게 불합리한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는 공서에 반한다.⁶¹⁾

만일 피보험자가 손해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어떤 행위를 한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피보험자는 - 그 행위가 범죄행위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 보험은 우연한 것이지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원칙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피해를 복구할 수 없다. 액킨 경은 베레스포드 판결에서 집에 불을 지른 자, 선박을 전복시킨 자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생명을 끊은 자는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실시하였다. 위의 여러 고려사실 가운데 만일 고의적 손해(deliberate damage)가

묵시적 면책, 법규정 저촉, 불법행위(unlawful activity: 보험수익자에 의한 피보험자 살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 범죄사망면책, 자살), 징벌적 손해배상, 대리책임, 무보험운전자 담보 등이다. 그 밖에 가족간 교통사고 면책, 다른 가구 자동차 면책, 기명운전자 면책, 보험자의 예방조치, 경제적 무가치, 가시적 표시조항, 철물안전조항, 고의행위에 의한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초래, 예상손실, 합리적 기대 등이 다루어진다.

59) Assurance와 insurance는 혼용된다. Clarke, Burling & Purves, *supra* note 8 at 114.

60) *Id.* at 798-800.

61) Abraham & Schwarcz, *supra* note 48 at 105.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행위의 결과가 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는 공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보험계약의 해석문제일 뿐이라고⁶²⁾ 한다. 타인을 살해한 자가 살해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투며 입은 부상에 대하여 상해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회사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공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한바⁶³⁾ 있다. 그러나 자살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행한 범죄는 아니므로 망인의 죽음에 대하여 보장하는 것이 공서위반은 아니다.

자살이 범죄시되던 시절에 자살로 사망한 자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자살을 부추기고 자살할 의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자가 늘 것이라고 우려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앞의 베레스포드 사건에서 귀족원은 자살을 불법행위로 인식하였고 또한 해당 약관에 불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회피할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항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의 자살이 면책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피보험자측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액킨 경은 해당 종류의 계약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또는 대다수나 일정비율의 계약당사자가 해를 끼치는 부적절한 행위 즉 공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유혹에 노출되며 그에 굴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범죄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실시하였다.⁶⁴⁾ 이와 같이 잘못된 행위의 동기를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악행을 할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동기를 제공하며 공서위반 행위자가 결과를 획득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자살법』의 폐지에 따라 자살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므로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공서위반은 아니게 되었다.⁶⁵⁾ 또 자살면

62) Clarke, Burling & Purves, *supra* note 8 at 802는 베레스포드 판결을 예거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입법례에 따르면 고의손실(wilful loss)에 대한 보상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다. Clarke 교수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사기로 인한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 프랑스 『보험법전』 제L113-1조를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 이는 공서라기 보다는 계약해석의 명백한(*prima facie*) 원칙으로 이해한다. 이에 비하여 미국에서는 다수 법원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 상속인인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공서의 문제로 보았다 (French & Dobbyn, *supra* note 3 at 205).

63) Gray v. Barr[1971]2 Q.B. 554 at 582.

64) Fender v. St. John-Mildmay [1938] AC 1, 13. Clarke, Burling & Purves, *supra* note 8 at 801.

책을 처음부터 공서문제가 아니라 보험약관의 해석문제라고 보는 베레스포드 사건의 귀족원 판결의 입장에서는 자살면책조항의 해석은 『자살법』의 폐지 여부와 상관없는 문제이다.⁶⁶⁾

위 베레스포드 판결에서 액킨 경은 “Fender v. Mildmay 사건 판결을⁶⁷⁾ 본 사람들은 그 판결에서 대법관의 다수가 동의한 공서원칙의 운영에 관한 엄중한 경고를 기억하게 된다. 대법관들은 스윙프트(Swift J.)의 판결을⁶⁸⁾ 파기한 항소법원 판결을⁶⁹⁾ 지지하였는데, 항소심 판결은 보험증권의 문언이 어떠한 간에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지닌 동안 자살을 결행한 피보험자의 개인적 대리자에게 해당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공서에 반한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매우 파급효과가 클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귀족원은 피보험자측의 사기적 행위를 더 고려하였을 수도 있지만 귀족원은 공서에 광범위한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 원칙은 “법원은 범죄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절대원칙이다. 자살은 범죄이므로⁷⁰⁾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는 결론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거듭 밝히지만 보험계약상 자살문제가 공서와 표리를 이루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초기 보험판례들은 자살면책의 근거가 공서라고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 점에서 공서가 자살면책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자살면책이 법에 규정된 비는 없었다. 따라서 위에서 소개한 베레스포드 사건에서 실시된 액킨 경의 논리로 볼 때 자살면책은 약관규정에 따른, 환언하면 해당약관조항의 해석의 결과이다.

(3) 1982년 『몰수법』과 자살면책에 대한 구체적 구체명령

자살면책조항과 달리 다른 사람을 살해한 어떤 사람도 그 후에 그가 저지른 행위로부터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몰수규범(forfeiture rule)은 그것이 법규정이전⁷¹⁾ 약관규정이전 간에 공서조항으로 이해된다.⁷²⁾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정한

65) Birds, Lynch & Milnes, supra note 19 at 402.

66) Gray v. Barr[1971]2Q.B.554 at 582.

67) [1938] A.C. 1; [1937] 3 All. E.R. 402.

68) [1936] 2 All. E.R. 1052.

69) [1937] 2 All. E.R. 243.

70) Per Lord Atkin [1938] 2 All. E.R. at P. 607. E.

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살해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상법 제659조, 제732조의2). 그런데 위와 같은 영국의 『몰수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대하여는 비판론도 이어졌다. 오랜 세월 학대를 겪은 후에 폭력 남편을 살해한 아내나 불치병에 걸린 남편의 자살을 돕는 아내, 고령자의 끝없는 외로움, 불치의 질병, 깊어진 정신질환, 경제적 극빈 상황 등 절망의 결과로 살인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의회는 공격자의 도덕적 책임, 재정적 상황, 살해행위의 도발성 등 제반 상황에 따라 공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몰수법』의 적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⁷³⁾ 베레스포드 사건의 피보험자인 롤런드슨 대령은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하였는데 『몰수법』에 따르면 법원이 그의 유산관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여지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⁷⁴⁾ 『몰수법』은 다양한 이유와 동기로 행하여지는

71) 몰수규칙은 오랫동안 확립된 보통법의 원칙으로 누구도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이득을 얻어서 안 된다는 원칙(Cleaver and others v. Mutual Reserve Fund Life Assoc [1982] 1QB 147)이다. 이는 사회보장에서도 원칙이다(R(G) 2/79; R v. Chief National Insurance Commissioner ex parte Connor [1981] 1QB 758). 1982년 영국의 『몰수법』은 동법의 ‘몰수규칙(forfeiture rule)’이란 특정 상황에서 타인을 살해한 사람이 그 살인으로 인하여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공서’규칙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제1조). 동법에서 ‘다른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사람’에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불법적으로 돕거나 방조하거나 조연하거나 알선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들이 유언장이나 장례규칙, 생명보험수익자 지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재산, 재산 및 소유의 수익자였다면, 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그들이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어떤 유산도 몰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은 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살인자들이 피해자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범인과 사망자의 행위 및 법원이 볼 때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상황들을 고려할 때, 몰수규칙의 효력이 수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안”에서는 수정을 명한다. 『몰수법』은 불법적 살해자와 살해된 자가 달라야 하므로 베레스포드 사건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다. 몰수규칙에 따라 살인범죄자가 재산지분의 취득이 금지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 규칙의 효과를 수정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범죄자와 사망자의 행위 및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몰수규칙의 효과를 수정할 수 있다. 몰수규칙의 효과를 수정하는 명령은 일정한 시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몰수법』을 적용하는 경우, 법원은 남편을 칼로 찔러 살해한 아내가 과부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한 적이 있는데, 그녀가 과실치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고의나 무모함이 없었다는 이유로 단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면 ‘몰수규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중요한 것은 범죄명이 아니라 범죄의 성격이다. 『몰수법』 아래의 법원은 불법적으로 타인을 살해한 자에게 생명보험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할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 『몰수법』은 자살을 공모, 교사, 방조한 자가 생존한 경우, 공공의 이익상 그에 대한 형사제재 부과는 불필요하며, 몰수에 대한 구제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s.2(4)에 의하여 제3자보험에는 그 적용이 없다. Forfeiture Act 1982, s.1(1), s.2. Merkin, *supra* note 21 at 281-282; Birds, Lynch & Milnes, *supra* note 19 at 385.

72) Merkin, *Id.* at 281. 몰수원칙은 특정한 상황에서 타인을 불법으로 살해한 자가 살해한 후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서’이다.

73) *Id.* at 283-284.

자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써 획일적 자살관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몰수법』의 기본적인 시각은 자살에 대하여 댓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어서 이 법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또 자살행위자를 무조건 비난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행하여진 일반적인 자살행위와 안락사, 존엄사, 연명치료 거부와 같은 일종의 자멸(self destruction)을 어떻게 구별하여 다루어야 하는지의 문제, 도덕적 비난가능성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고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험보호를 하는 것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

III. 생명보험약관상 자살조항

1. 영국의 보험계약에서 약관의 위상

영국 보험계약의 법원(source of law)에서 보험증권(약관)의 위상은 특별하다. 보험증권은 오랫동안 판례를 반영하여 보험자들에 의하여 공정하게 통일되어 왔고 그 결과 모든 보험계약에서 사용되므로 거의 법이라 여겨진다.⁷⁵⁾

자살에 관하여 영국 보험법은 어떤 규정도 둔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살법』과 『몰수법』 등의 영향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약관의 입장이 아주 중요하다.

2. 자살면책조항

상해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 자신의 고의적 손상, 불법적 행위, 전투 등은 담보제외사유(exceptions)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손상은 사고라고 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위험 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와 같은 손상이 피보험

74) 『몰수법』이 적용된 리딩 케이스로 Dunbar v. Plant 1998 ch.412 사건이 거론된다. 법원은 직장서 절도행각으로 위기에 몰린 여성과 그 파트너가 수차례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남성만 사망한 사건에서 자살의 동기를 고려할 때 이른바 “도덕적으로 완화된 불법살인”(“morally mitigated” unlawful killings)을 공서문제로 다룰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을 적극 지지하는 Davey & Coggon, *supra* note 30 at 532-535.

75) Birds, *supra* note 2 at 23.

자의 심신상실 상태나 음주의 영향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심신상실 상태나 주취 상태에서의 자살로 담보제외가 되는지 여부는 약관해석의 문제이다.

생명보험계약에서 자살면책은 심지어 피보험자가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던 경우조차도 모든 자기과괴 행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결되어⁷⁶⁾ 왔다.

1961년 『자살법』 시행 후에는 자살면책에 대한 판례가 공포되지 아니하므로 베레스포드 판결도 선례로서의 의의를 잃었다고 한다.⁷⁷⁾ 그러나 현행 생명보험계약에서도 자살면책조항은 베레스포드 사건 당시의 그것과 표현이 달라지지 않았다.⁷⁸⁾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생명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증권발행)시기(始期)로부터 1년 이내에, 판단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whether sane or insane),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그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누구에 대하여도 보험증권은 무효라고 규정한다. 이는 결국 베레스포드 판결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살법』 폐지에 따라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의도적 자살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런 약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⁷⁹⁾ 또 『자살법』이 폐지되었지만 자살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약관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보험보호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다.⁸⁰⁾ 자살이 고의로 초래된 때에는 다른 일반적인 보험원칙대로 우연성이 결여된 사고에 대하여 묵시적 면책으로 보면 된다. 자살이 범죄라거나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공서위반이기 때문이 아니다. 자살에 대하여 약관에서 아무 규정이 없는 때에도 면책으로 해석된다. 면책을 명정하지 아니한 이상 부책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지만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만일 약관에 “판단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라는 규정이 없다면 자사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사망이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어

76) Clift v. Schwabe(1846) 3 C.B. 437; Borradaile v. (1843) 5M. & G.639.

77) Merkin & Colinvaux, *supra* note 26 at 1117.

78) 자살면책과 부책의 어느 형식으로도든 설계가 가능하다는 Clarke, Burling & Purves, *supra* note 8 at p.807.

79) Merkin & Colinvaux, *supra* note 26 at 1117.

80) Clarke, Burling & Purves, *supra* note 8 at 806.

야 한다. 그러나 판단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보험자는 면책된다. 아직까지 베레스포드 판결에서 액킨 경이 밝혔던 바와 같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자살하는 경우까지 보험금을 주겠다는 합의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면책기간 내의 자살을 담보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연성의 결여 때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가 위와 같이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약관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⁸¹⁾ 따라서 약관에서 정한 일정기간 내의 자살은 피보험자가 어떤 정신상황에서 자살한 것이건 간에 보험자가 면책되고 일정기간이 넘은 후에 실행된 자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주어야 한다.⁸²⁾

영국의 경우 심지어 자사의 경우에도 면책한다는 규정이 삽입되는 것에 보험계약자 측으로부터 크게 저항이 없는 것은 면책기간을 1년~2년으로 비교적 짧게 잡고 있고,⁸³⁾ 면책기간 경과 후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노려 자살한 특단의 사정이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고⁸⁴⁾ 추측된다.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에서의 자살에 관하여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이 담보에 포함된 죽음이라는 일응의 증명을 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망이 면책조항에 포함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때에 배심에게 제출하는 증거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므로 증명책임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데, 피보험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증명을 불문한다면 그 증명책임은 훨씬 경감될 것이다. 이 점이 우리가 영국의 처리방식에 주목할 만한 점이다.

피보험자가 자살할 의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기행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선의의무 위반이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살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으며 일정기간 내에 자살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향을 지녔다고 할 것이다.

자살에 대한 담보제외는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를 감추기 위한 은폐의 경우 그 자살행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81) Ellinger & Co v. Mutual Life Ins Co[1905] 1 KB 31(CA).

82) Clarke, Burling & Purves, *supra* note 8 at 386.

83) 이 점에서 독일 『보험계약법』 제161조(3년 및 연장 합의 가능)와 다르다.

84) 이 점에서 일본 판례(最高裁 平成16年3月25日 判決(平成13年(オ)第734号, 平成13年(受)第723号, 民集58卷3号753頁, 裁判所時報1360号2頁, 判時1856号150頁) 및 最高裁 平成17年6月17日判決(平成17年(オ)第710号, 平成17年(受)第809号)과 다르다.

IV. 결 론

영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자살을 죄악시하는 종교적 시각과 이를 범죄로 간주하는 커먼로 원칙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의학적 이유로 인하여 자살이 초래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늘어났다. 보험에서 자살은 생명보험의 문제이며, 상해보험의 문제는 아니다. 오랫동안 위의 종교적·법적 관점에 따라 생명보험에서도 자살이 면책으로 되었다. 그러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만 면책하고, 면책기간 경과 후에는 자살인지 자사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부책하는 타협을 해왔다. 이와 같은 기조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커먼로 국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험자면책이나 부책의 근거는 약관이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이며, 공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베레스포드 판결 이후 지금껏 자리잡고 있다. 자살의 사회적·법적 의미 때문에 자칫 이를 공서의 문제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이 점은 극복되었다. 이에 따라 약관의 선택지는 더 넓어졌지만 오랫동안 변한 것은 없어 보인다. 보험자는 보험가입 초기의 자살은 역선택, 나아가 부당이익의 결과를 초래하고 자살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면책기간 내의 자살에 대하여는 무조건 면책으로 하고, 면책기간 경과 후에는 무조건적으로 부책으로 하는 것이 영국 생명보험약관의 일반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생명보험과 상해사망보험에서 자살사고를 취급하는 태도가 다르고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심해지고 있다. 면책기간의 유무도 다르며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기도 어렵다. 현재 자살여부에 대한 과도한 분쟁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더구나 최근 법원의 입장이 자사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경향에 있다고 이해하면 이는 위험단체에게도 부당한 위협의 전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된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영국의 처리방법을 살펴 본 것이다.

영국식 약관조항은 자살보험금 분쟁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저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우리가 영국식의 해결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구별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우리 식의 해결방법은 독일 『보험계약법』 제169조에서 유래하였다고 추측되는데 보험계약에서의 담보여부를 자살에 대한 주관적 책임과 연결시켜야 할 논리 필연적 이유가 있는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살을 언제나 부담보로 하되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의 개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보험계약자에게 자살담보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도 유연한 방법이다.

영국식 해결방법의 장·단점과 논리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Books]

- A. A. Tarr, *Australian Insurance Law*, The Law Book Company Limited, 1987.
- Andrew McGee, *Life Assurance Contracts*, Routledge-Cavendish, 2006.
- Bryan A. Garner, *Black's Law Dictionary*, 9th ed., West., 2009.
- Christopher C. French & John F. Dobbyn, *Insurance Law in a Nutshell*, 6th ed., W. Academic Publ'g, 2021.
- Christopher C. French & Robert H. Jerry, II, *Insurance Law and Practice: Cases, Materials, and Exercises*,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 E.R. Hardy Ivamy, *Dictionary of Insurance Law*, Butterworths, 1981.
- Jeffrey W. Stempel, *Interpretation of Insurance Contracts: Law and Strategy for Insurers and Policy Holders*, Little, Brown & Co., 1994.
- John Birds, Ben lynch & Simon Milnes, *MacGillivray on Insurance Law*, 13th ed., Thomson Reuters(Professional) UK Limited, 2015.
- John Birds, *Insurance Law in the United Kingdom*, 4th ed., Wolters Kluwer, 2018.
- Kenneth S. Abraham & Daniel Schwarcz, *Insurance Law and Regulation: Cases and Materials*, 6th ed., Foundation Press, 2015.
- Malcolm A. Clarke, Julian M. Burling & Robert L. Purves,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6th ed.,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09.
- Rob Merkin, *Lowry, Rawlings and Merkin's Insurance Law: Doctrines and Principles*, 4th ed., Hart Publishing, 2022.
- Robert M. Merkin & Raoul P. Colinvaux, *Colinvaux's Law of Insurance*, 11th ed., Sweet & Maxwell, 2016.
- Robert E. Keeton, Alan I. Widiss & James M. Fischer, *Insurance Law: A Guide to Fundamental Principles, Legal Doctrines, and Commercial Practice*, 2nd ed., W. Academic Publ'g, 2017.
- Robert H. Jerry, II & Douglas R. Richmond, *Understanding Insurance Law*, 6th ed.,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Articles}

Alex B. Long, “Abolishing the Suicide Rule”, *Nw. U. L. Rev.*, Vol.113, 2019.

James Davey & John Coggon, “Life Assurance and Consensual Death: Law Making for the Rationally Suicidal”, *Cambridge L.J.* Vol.65, 2006.

Shivam Pandagr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Suicide Clause in Life Insurance Policy in India, USA and UK”, *INT’L J.L. MGMT. & HUMAN.*, Vol.4, 2021.

Suzanne M. Alford, “Note: Is Self-Abortion a Fundamental Right?”, *Duke L.J.*, Vol.52, 2003.

Timothy S. Hall, “A Modern Forfeiture: Towards Abolition of the Life Insurance Suicide Exclusion”, *Rutgers J. L. & Pub. Pol’y*, Vol.18, 2021.

Travis Luis Pantin, “What Can’t be Insured: The Policyholder’s Own Bad Acts”, *Conn. Ins. L.J.*, Vol.29, 2023.

{기타}

OECD (2023), Suicide Rates (indicator). doi: 10.1787/a82f3459-en. <https://data.oecd.org/healthstat/suicide-rates.htm>(2023. 6. 1. 방문).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deaths/bulletins/suicidesintheunitedkingdom/2021registrations>(2023. 09. 01. 방문).

<https://www.thehistorypress.co.uk/articles/the-notorious-case-of-dr-crippen/>(2023. 6. 20. 방문).

<Abstract>

A Study on the Suicide in Insanity in U.K. Life Insurance Policy

Kim, Won Gak^{*}

According to the OECD report, the suicide rate in the U.K. in 2020 was 8.4 per 100,000 people, significantly lower than South Korea's rate of 24.1 per 100,000 people. In the U.K., however, suicide is a more serious legal topic than in other countries. In the U.K., life insurance policies can pay out for suicide. Nevertheless, most policies have provisions or clauses that limit death benefit payments. Typically, a policy will not pay for suicides committed within a one- or two-year period (commonly referred to as the exclusion period), even if the suicide was committed while in a state of insanity. In the case of a reinstated insurance contract, this period shall be calculated anew. However, if the suicide occurs after the exclusion period has expired, the insurer will pay the claim regardless of whether the suicide was committed in a sane state of mind, if the suicide was intended from the time the policy was taken out, or if the suicide was committed solely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the claim. Suicide exclusion clauses of this nature are standard in U.K. life insurance policies. On the other hand, unlike most individual policies, suicide clauses are not standard in group policies. An incontestability clause, which usually sets a two-year contestability period, operates independently of the suicide clause and allows suicide to be contested.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U.K. and South Korea is that disputes over the payment of suicide benefits are rare in the U.K. This motivated the author to write this article. The traditional attitude of English law has been largely adopted in U.S. insurance law and

^{*}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 Lecturer of Law,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The University of Iowa S.J.D.

practice. In Korea, in life insurance (suicide within two years) and accident insurance (suicide within the policy period), the insurer's exemption from its liability depends on whether the suicide was committed in a state of insanity. However, in recent suicide benefit litigation, beneficiaries have often argued that suicide was committed in a state of insanity, and courts have recognized insanity more broadly than in the past. This trend of interpretation by the courts goes beyond the purpose of the suicide exclusion, which is to be construed narrowly in cases of insanity. Furthermore, the socioeconomic costs of the ongoing disputes are increasing.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Anglo-American insurance practice has significantly resolved the problems faced by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British society's view of suicide, dramatically influencing the insurance practice related to suicide. The paper will then analyze the Beresford decision, an essential reference in the Anglo-American literature on suicide exclusion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e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attitudes of the U.K. terms and conditions and summarizes the points for our reference. The issue of suicide in U.S. insurance law and practice, similar to but different from the U.K.'s, will be introduced in a follow-up study.

Key Words : suicide in U.K. life insurance contract, suicide-exclusion clause, insanity, exclusionary period, public policy, suicide act, Forfeiture act

